

대법원 2016. 4. 15 선고 2015다7417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6. 4. 15 선고 2015다7417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4 선고 2015나34672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6. 4. 15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나34672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기택

대법관이인복

주심대법관김용덕

대법관김소영